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14. 2. 12.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4년 1월 27일

나. 발 의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2월 4일

라. 상정일자 : 제18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
제4차 회의(2014년 2월 11일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 : 안전건설국장 김숙희)

가. 제안이유

❍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설치와 운영 시, 민간단체 등에 위탁 및 소요비용을 보조·융자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나. 주요내용

❍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설치·운영 사항 신설

-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·운영에 관현 사항
- 민간단체 등 운영 시 예산범위에서 보조·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
- 위탁운영에 교통안전 체험장을 추가로 명시

❍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법률용어 순화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태선)

❍ 본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,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구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 임.

❍ 주요내용을 보면

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교육장의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, 권한의 위탁범위에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을 추가 신설함.

❍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「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가 2007. 9. 27 제정되었고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자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교육장 설치의 필요성이 커짐.

- 영등포구에서는 구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3. 11월 안양천 갈대1구장 옆에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이 설치되었음.
- 이에 따라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구민, 학생, 어린이 등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.

❍ 참고로 현재 서울시내 타 자치구에 설치·운영중인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은 용산구를 포함하여 13개구로, 직영 2개구 민간위탁은 11개구임.

- 향후 교육장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업체 선정과 관리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❍ 그 밖에 조문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음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제 270 호

제출연월일 : 2014. 2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교통안전체험 교육장 설치와 운영 시 민간단체 등에 위탁 및 소요비용을 보조·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설치 · 운영 사항 신설

○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10조2 제1항)

○ 민간단체 등 운영 시 예산범위에서 보조·융자할수 있도록 규정(안 제10조2 제2항)

○ 위탁운영에 교통안전 체험장을 추가로 명시 (안 제17조 제1항)

나.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법률용어 순화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1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(1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(2) 부패영향평가 : 평가실시(의견반영)

(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실시(의견없음)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(2013.12.12.~2014.1.2 20일간)결과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”을 “조례는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법 제5조의 규정”을 “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“소요되는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”를 “법 제11조제2항에 따른”으로,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8조 단서 중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영”을 “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제10조의2(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·운영) 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어린이,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·융자할 수 있다.

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"범위안"을 "범위"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"한하여"을 "한정하여"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"자전거주차장·정비소·대여소"를 "자전거주차장·정비소·대여소·교통안전체험장"으로 한다.

제17조제2항 중 "있다"를 "있으며,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"으로 한다.

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8조 중 "시행에 관하여"를 "시행에"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 조례는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및 같은 법 시행령 ----------.
제5조(정비계획의 수립) ①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(이하 “정비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고,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②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 1. ~ 5. (생 략) 6.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 7. (생 략) ③ ~ ⑤ (생 략)	제5조(정비계획의 수립) ①----------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----------. ②-----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---------- 필요한 ---------- 7. (현행과 같음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6조(자전거주차장의 설치) ① (생 략) ②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구청장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·융자할 수 있다.	제6조(자전거주차장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 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---------- 범위----------.
제8조(자전거 주차요금) 법 제11조에	제8조(자전거 주차요금) ----------

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. 다만, 자전거주차장의 관리·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.	----------. ---------- 범위----------.
제9조(자전거주차장의 운영 등) ① (생략)	제9조(자전거주차장의 운영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자전거주차장의 설치·관리자는 주차 후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경우에는 법 제20조와 영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.	②----------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-------.
제10조(자전거정비소·대여소의 설치·운영) ①·② (생 략)	제10조(자전거정비소·대여소의 설치·운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정비소·대여소를 설치·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보조·융자할 수 있다.	③---------- 범위----------.
〈신 설〉	제10조의2(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·운영) 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어린이,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	②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·운

	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·융자할 수 있다.
제16조의2(자전거 보함)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. 1.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구민으로서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 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. 2. (생 략)	제16조의2(자전거 보함) ---------- ---------- 범위-------- ----------.
	1. ---------- ---------- 한정하여--------- ----------.
	2. (현행과 같음)
제17조(권한의 위탁) ①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주차장·정비소·대여소의 관리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	제17조(권한의 위탁) ①---------- 자전거주차장·정비소·대여소·교통안전체험장- ----------.
②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,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 ---------- 있으며,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	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〈신 설〉	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18조(시행규칙) --------- 시행에 -- ----------.